

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

제 정 1989.11.04.
부분개정 2005.01.29.
부분개정 2006.01.21.
부분개정 2007.01.19.
부분개정 2007.08.17.
부분개정 2008.01.25.
부분개정 2008.08.29.
부분개정 2012.09.24.
부분개정 2013.02.22.
부분개정 2014.08.22.
부분개정 2016.08.19.
부분개정 2018.02.23.
부분개정 2023.02.2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하고 경실련으로 약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) 이 연합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.

1. 조사연구
2. 시민조직
3. 시민교육
4. 홍보선전
5. 시민고발센터운영 및 법률구조
6.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행동
7. 그 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(자격 및 종류)

1. (일반회원)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 연합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반회원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이 연합의 일반회원이 된다.
2. (정회원)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 자는 이 연합의 정회원이 된다.
3. (후원회원)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,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의무) 일반회원 및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연합의 규약,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
2.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
4. 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

제7조(권리) ① 일반회원, 정회원,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
- ②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③ 전(前)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8조(징계)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장의 청구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청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, 정권,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가입,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)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3장 조직

제10조(회원대회) 회원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사업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,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중앙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중앙위원회) ① (지위) 중앙위원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
- ② (구성) 중앙위원회는 150인 이상 3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1인의 의장과 약간 명

의 부의장을 둔다.

③ (선출)

1. 중앙위원은 이 연합의 각 부문조직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조직별 중앙위원의 배분과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2.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④ (권한)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
1.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
2.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
3. 규약의 개정
4.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
7. 지부조직의 설치 및 폐지
8. 회원대회가 위임한 사항

⑤ (소집) 중앙위원회는 연1회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중앙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⑥ (의결) 중앙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(권한의 위임) 중앙위원회는 다음 중앙위원회회의전까지 그 권한을 상임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12조(공동대표) 공동대표는 이 연합을 대표한다. 다만 공동대표는 이 연합의 행정사무 및 재정회계 등 일부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(고문 및 지도위원)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14조(자문회의) 상임집행위원회는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자문회의를 둘 수 있으며,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15조(감사)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.

제16조(상임집행위원회) ① (지위) 상임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.

② (구성) 상임집행위원회는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,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

③ (선출)

1. 상임집행위원은 중앙위원회와 각 부문조직에서 선출하며 조직별 상임집행위원의 배분과 선출

방법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2.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상임집행위원장 후보 추천 및 선출절차를 담당할 인선위원회를 둔다.
 - ④ (조직)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⑤ (권한)
 1.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.
 2. 중앙위원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
 3. 예산,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
 4. 고문, 지도위원 위촉
 5. 상임집행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
 6.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후보의 추천
 7. 사무총장 선출
 8.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에 관한 승인
 9.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
 10. 특별기구, 부설기관, 지부조직, 회원조직의 사고지부 및 활동정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
 11.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 - ⑥ (소집) 상임집행위원회는 월 1회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상임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 - ⑦ (의결)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17조(사무국)** ① 이 연합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하며, 사무총장은 공동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상임집행위원장, 정책위원장, 조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에 그 승인을 요청한다.
 - ③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을 제외한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상임집행위원장과 협의의 거쳐 행한다.
 -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18조(위임) 중앙위원회, 상임집행위원회의 출석권은 위임할 수 있다.

제4장 활동조직

제19조(정책위원회) ① 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.

- ② 정책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0조(조직위원회) ① 이 연합의 아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인 이를 총괄한다.

1. 지역조직 활동의 협의 및 지원
2. 전국 및 지역공동사업에 대한 협의 및 지원
3. 기타 전국적 통일성 및 협력관계를 높일 수 있는 사업

- ② 조직위원회는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1조(시민입법위원회) ① 이 연합의 시민입법운동을 위해 시민입법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민입법위원장인 이를 총괄한다.

- ② 시민입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2조(윤리위원회) ① 연합의 도덕적, 운동적 관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규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윤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3조(경실련아카데미) ① 이 연합의 임원, 상근활동가, 회원, 시민들에게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교육 훈련을 위해 경실련아카데미를 설치한다.

- ② 경실련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4조(지부조직 및 지역경실련협의회) ① 이 연합은 지역에 지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, 지부는 ○○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한다. 지부의 설립, 운영,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- ② 지부조직 상호간의 사업 및 정보교류를 위해 지역경실련협의회를 두며, 그 구성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- ③ 지부조직은 이 연합의 정책적 일관성과 조직적 통합성을 유지해야 하며,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5조(회원조직) 이 연합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회원조직을 둘 수 있다. 회원조직의 설립, 운영 및 폐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26조(임원의 임기 및 결격) ① (임기) 공동대표, 중앙위원회 의장단, 중앙위원, 고문 및 지도위원, 감사, 조직위원장, 국제위원장, 시민입법위원장, 각 특별위원회 및 정책소위원회 위원장, 각 특별기구의 이사장, 대표 및 운영위원장 등의 임기는 2년, 상임집행위원장, 정책위원장, 상임집행위원

의 임기는 1년,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- ② (임기개시)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. 다만,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중앙위원회 선출로부터 차기년도 1차 중앙위원회까지로 한다.
- ③ (연임제한) 경실련 및 산하 각 특별기구의 모든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조직위원회, 시민입법위원회, 각 특별위원회와 정책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임 후 임기 종료되는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수 있다. 상임집행위원, 중앙위원, 고문 및 지도위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, 지역경실련은 표준규약을 따른다. <개정 2023. 2. 24.>
- ④ (자격) 경실련 임원은 정회원 중 선임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- ⑤ (결격) 정당에 가입한 자는 이 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 정당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.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1항에 열거된 임원 외에 지역조직 또는 부문별 조직에서 위 1항의 임원직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.

제5장 특별기구와 부설기관

제27조(특별기구와 부설기관) ① 이 연합은 연합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- ② 특별기구는 (사)경제정의연구소, 경실련 통일협회, (사)경실련 도시개혁센터, 시민권익센터 등이다.

제28조(운영 원칙) 각 특별기구는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있으며 본 연합의 규약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. 다만 별도의 정관이 이 규약이나 이 규약에 의해 제정된 규칙(이하 규약 등이라 한다)에 어긋나는 경우 이 규약 등이 우선한다.

제29조(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성립조건) ① 각 특별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
1. 일정 수 이상의 회원 확보
 2. 재정의 독립
 3. 이 연합의 운영비용의 일정한 분담금 납부
- ② 전항 제1호와 제3호의 회원의 일정 수와 분담금은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.

제6장 예산 및 결산

제30조(후원회)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1조(수입)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, 특별모금, 사업수익으로 한다.

제32조(회계년도) 이 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3조(예결산 공개) 이 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.

제34조(잔여 재산의 귀속) 이 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부칙

제1조(규약개정) 이 연합의 창립대회 이후의 규약은 중앙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다.

제2조(준칙) 이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준한다.

제3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제1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은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제1조(경과규정) 이 규약에 의해 첫 번째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공동대표, 중앙위원, 고문, 지도위원의 임기만료일은 199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② 상임집행위원, 상임집행위원장, 부위원장, 정책연구위원장, 조직위원장 등 임기 1년의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- ③ 현직 사무총장의 임기만료일은 199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2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2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2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3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을 제4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경과규정) 4차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, 중앙위원, 고문, 지도위원의 임기는 1997년 7월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4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경과규정)

- ① 이 규약 개정 전에 선임된 모든 임원의 임기는 규약 개정 후 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됨과 동시에 만료한다.
- ② 이 규약 개정 전의 연합의 산하기구 및 각 위원회는 개정 후 규약에 의한 기구로 본다.
- ③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선출직 중앙위원은 규약 개정 전 중앙위원회가 추천한다.
- ④ 이 규약에 의한 최초의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은 규약 개정 전 상임집행위원회가 추천한다.

제2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5기 5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8차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6기 2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7기 5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8기 3차 대의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9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9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9기 4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0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제2조(경과규정) 현 조직위원장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0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2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2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3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4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5기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규약은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